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 연월일	2019. 10. 7.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9. 10. 7.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운용시 기존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용어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 기존 임대방식과 다른 형태의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의 정의필요

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도 규정 신설(안 제7조)

- 임대절차 진행 시 사용자에게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하도록 지도

다. 임대사용 제한 단서조항 추가(안 제8조제2항)

- 기존 임대방식과 달리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의 영업적 사용인정

라. 사용자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의무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마. 반환 발생사유를 모두 규정하지 않은 미반환원칙 조문 수정(안 제11조)

- 열거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적극적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

바.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 규정 삭제(안 제13조)

- 면책 또는 책임을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경우 상위법(지방자치법 22조) 위반

사.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자치조례의 부적절 준용 삭제(안 제17조)

－ 법령이 아닌 사업지침으로 조례 준용 불가

아. 상위법령에 맞게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표 개정(별표 1)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붙임 2번 참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1) 기획감사담당관(법무개혁담당): 규제심사

2) 복지지원과(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1호

가) 예고기간: 2019. 9. 6. ~ 9. 26.(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이란 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 중 군 주산지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단,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후)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표 (제9조 관련)			
구 입 금 액	일 수	임대료(원)	비 고
100만원 미만	1	8,00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	10,00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	12,0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	16,00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	19,000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	23,000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1	27,000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1	31,000	
8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	34,000	
9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	39,000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1	55,000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	72,000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1	93,000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	110,000	
3,000만원 이상~3,500만원 미만	1	136,000	
3,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1	157,000	
4,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	1	165,000	
4,500만원 이상	1	178,000	
(단, 광역방제기는 1일 210,000원으로 한다.)			

※ 사용료 산정기준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가목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 85%(별표 1의2 다목), 백원단위 이하 절사

③ 임대사용은 농업용에 한하며,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 ③ (생략)

④ 출고 후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문 등을 정비하는 등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작성자: 농업정책과장 박 문 규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6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6.25.>